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899
----------	------

2024년 6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I.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4. 5.27
- 제안자 : 서울특별시장
- 회부일자 : 2024. 5.30
- 상정일자 : 제32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2024. 6.20)
 -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2024. 6.24)
 - 승인

Ⅱ. 제안설명의 요지 (재무국장 김진만)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7개 기금 26개 계정의
2023년도말 조성액은 7조 6,623억원으로,
2022년도말 대비 6.3%인 4,542억원이 증가하였음
- 2023회계연도 중 기금 조성액은
일반 및 특별회계 전입금이 1조 4,435억원,
다른 회계나 기금에서 전입된 예수금 1조 596억원,
공기업 및 민간에 대한 융자금 회수수입 2,722억원 등임
- 기금 사용액은
융자성·비용자성 사업비 1조 1,396억원,
예수금·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1조 5,121억원 등임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엄지운)

1. 제안경위

- 「서울특별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과 「서울특별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은 서울특별시장이 '24년 5월 27일 제출한 것으로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2. 2023회계연도 결산 개요

가. 세입·세출 결산 개요¹⁾

- '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51조 4,900억 4,800만원으로 이는 직전회계연도(53조 4,687억 9,900만원) 보다 $\Delta 3.7\%$, $\Delta 1$ 조 9,787억 5,100만원 감소한 것임
 - 최종예산액 50조 3,759억 8,100만원은 당초 본예산(47조 1,905억 1,200만원), 간주처리분(1,482억 3,300만원), 추경 증액 조정분(3조 372억 3,600만원)을 합한 것이며
 - 최종예산액과 직전회계연도 이월액 1조 1,140억 6,600만원을 합한 '23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직전회계연도(53조 4,687억 9,900만원)보다 $\Delta 3.7\%$, $\Delta 1$ 조 9,787억 5,100만원 감소한 51조 4,900억 4,800만원임

1) ■ 결산서는 원 단위로 작성되나 검토보고서의 경우, 백만원 미만 단위는 절사함
■ 증감률 등의 경우, 소수점 1자리까지 표기하고, 그 미만은 절사함에 따라 일부($\pm 0.1\%$ 범위내) 차이 있음

- 세입결산액은 직전회계연도(55조 5,716억 8,200만원)보다 △8.6%, △4조 8,131억 2,800만원 감소한 50조 7,585억 5,400만원으로 일반회계 36조 2,152억 6,800만원과 특별회계 14조 5,432억 8,500만원임
- 세출결산액은 직전회계연도(50조 2,765억 8,700만원)보다 △5.6%, △2조 8,161억 3,200만원 감소한 47조 4,604억 5,500만원으로 일반회계 34조 9,284억 7,200만원과 특별회계 12조 5,319억 8,200만원임
-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직전회계연도(5조 2,950억 9,500만원) 보다 △1조 9,969억 9,700만원 감소한 3조 2,980억 9,800만원임

〈표 3-1〉 세입·세출결산 총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가)	세출결산액 (나)	결산상잉여금 (가)-(나)	결산상잉여금 세부내역	
2023	총계	51,490,048 <2023최종> 50,375,981 <2022→2023이월> 1,114,066	50,758,554 (98.6%)	47,460,455 (92.2%)	3,298,098 (6.4%)	명 시 이 월 ^{주1)} 641,198 사 고 이 월 860,581 건설개량이월 ^{주1)} 32,902 계 속 비 이 월 - 보조금실 제반납금 117,424 채 무 상 환 - 물 납 등 - 순 세 계 잉 여 금 1,645,991
	일반회계	38,319,642 <2023최종> 36,232,230 <2022→2023이월> 275,161	36,215,268 (99.2%)	34,928,472 (95.7%)	1,286,796 (3.5%)	명 시 이 월 ^{주1)} 42,345 사 고 이 월 213,859 계 속 비 이 월 - 보조금실 제반납금 97,913 채 무 상 환 - 물 납 등 - 순 세 계 잉 여 금 932,676
	특별회계	14,982,655 <2022최종> 14,256,679 <2021→2022이월> 892,477	14,543,285 (97.1%)	12,531,982 (83.6%)	2,011,302 (13.4%)	명 시 이 월 ^{주1)} 598,853 사 고 이 월 646,721 건설개량이월 ^{주1)} 32,902 계 속 비 이 월 - 보조금실 제반납금 19,510 채 무 상 환 - 물 납 등 - 순 세 계 잉 여 금 713,314

※ 주1) 명시이월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만, 건설개량이월은 공기업특별회계만 작성됨

()는 예산현액 대비 비율임

나. 예비비 결산 개요

- '23회계연도 예비비는 1,488억 7,100만원을 편성하여 582억 900만원을 지출결정하고, 551억 1,100만원을 지출하였음

〈표 3-2〉 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	지출결정액 (가)	지출액 (나)	이월액 (다)	지출잔액 (가)-(나)-(다)
합계	148,871	58,209	55,111	173	2,924
일반회계	125,001	51,792	48,694	173	2,924
특별회계 ^{주1)}	23,870	6,416	6,416	-	0 ^{주2)}

※ 주1) 특별회계는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포함

주2)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잔액은 34,000원임

다. 기금 결산 개요

- 17개 기금, 26개 계정을 운용한 '23회계연도말 조성액은 7조 6,622억 7,9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말 조성액(7조 2,080억 8,100만원)보다 4,541억 9,800만원 증가한 것임
 - '23회계연도의 경우, 당해연도 조성액은 3조 2,389억 5,600만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2조 7,847억 5,800만원임
- 17개 기금, 26개 계정을 운용한 결과 수입은 6조 5,317억 8,200만원, 지출은 6조 4,906억 8,300만원으로 기금의 결산결과를 제출하였음

3. 기금 결산 관련 검토

가. 기금결산 관련 검토

1). 기금결산 총괄 설명 관련

- 관련 법령은 회계연도마다 기금결산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어 금번 정례회중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제출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임
- 제출된 기금결산 승인안은 행정안전부의 관련 기준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①기금결산 총괄설명, ②기금 수입·지출결산, ③기금운용계획변경내용 설명서로 구성되어 있음
- '23회계연도 기금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서울특별시는 17개 기금, 26개 계정을 운용하여 당해연도말 7조 6,622억 7,900만원을 조성한 것으로 '22회계연도말 조성액(7조 2,080억 8,100만원)보다 4,541억 9,800만원 증가한 것임

〈표 3-3〉 2023회계연도 기금 조성 총괄현황

(단위 : 백만원)

전년도말 조성액 (A)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E = A + B)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7,208,081	454,198	3,238,956	2,784,758	7,662,279

- 기금결산 결과 2023회계연도중 3조 2,389억 5,600만원을 조성하고, 2조 7,847억 5,800만원을 사용함으로써 당해연도 조성액 증가액은 4,541억 9,800만원이 발생한 바,

- **당해연도 조성액**은 전입금 1조 4,435억 3,400만원과 예수금 1조 595억 9,400만원, 보조금 101억 1,100만원 등 3조 2,389억 5,600만원이며,
- **당해연도 사용액**은 비융자성사업비 6,889억 2,300만원, 융자성사업비 4,506억 8,500만원, 차입금원리금상환 1조 3,683억 2,400만원 등 2조 7,847억 5,800만원임

〈표 3-4〉 당해연도 조성액 및 사용액 현황

(단위 : 백만원)

조 성 액		사 용 액	
조 성 액 소 계	3,238,956	사 용 액 소 계	2,784,758
전 입 금	1,443,534	비 융 자 성 사 업 비	688,923
예 수 금	1,059,594	융 자 성 사 업 비	450,685
보 조 금	10,111	차 입 금 원 리 금 상 환	1,368,324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272,170	기 타 지 출	130,448
차 입 금	-	예 수 금 원 리 금 상 환	143,763
이 자 수 입	167,544	인 력 운 영 비	2,326
기 타 수 입	286,001	기 본 경 비	285

〈표 3-5〉 2023회계연도말 기금조성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기금명	계 (A = B + C)	연도말 시금고잔액 * 예치금 + 이월금 (B)	타회계 및 기금으로 예탁한 예탁금 (C)
계	7,662,279	2,719,814	4,942,465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938,917	1,192,284	4,746,633
통합계정	4,174,525	92,292	4,082,233
재정안정화계정	1,764,392	1,099,992	664,400
중소기업육성기금	266,171	246,171	20,000
용자계정	126,708	126,708	-
투자계정	88,769	88,769	-
사회적경제계정 ^{주 1)}	50,693	30,693	20,000
식품진흥기금	51,071	16,071	35,000
기후대응기금	79,115	51,115	28,000
도로굴착복구기금	32,754	32,754	
성평등기금	24,093	893	23,200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10,594	8,594	2,000
사회복지기금	69,202	38,892	30,310
노인복지계정	12,045	555	11,490
장애인복지계정	22,572	8,172	14,400
자활계정	9,853	5,433	4,420
주거지원계정	24,731	24,731	-
체육진흥기금	58,423	6,102	52,321
재난관리기금	929,809	929,809	-
재난계정	788,701	788,701	-
구호계정	141,107	141,107	-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 ^{주 2)}	32,995	32,995	-
대외협력기금	5,045	5,045	-
국내협력계정	1,828	1,828	-
국제협력계정	3,216	3,216	-
도시재생기금	79,686	79,686	-
관광진흥기금	6,697	1,697	5,000
서울관광긴급지원계정	1,256	1,256	-
서울관광플라자계정	5,441	441	5,000
공무원주거안정기금	4,172	4,172	-
하수도사업회전기금	73,231	73,231	-
고향사랑기금 ^{주 3)}	297	297	-

- 2023회계연도 기금운용현황은 전년도 이월액 361억 3,000만원과 당해 연도 수입액 6조 5,317억 8,200만원을 운용하여 6조 4,906억 8,300만원을 지출하고, 772억 2,9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표 3-6〉 기금 운용 총괄현황

(단위 : 백만원)

전 이 년 월 도 액 (A)	수 입 액 (B)	지 출 액 (C)	다 음 연 도 이 월 액 (D)	비 고
36,130	6,531,782	6,490,683	77,229	A+B=C+D

나. 기금의 수입·지출 결산 관련

1). 수입결산

- 2023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중 당초 수입계획액은 5조 1,973억 2,500만원이나 실제 수납액은 6조 5,317억 8,200만원으로 당초 수입계획 보다 1조 3,344억 5,600만원 증가하였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반영된 수입계획 6조 5,396억 1,300만원보다 78억 3,100만원 감소하여 수납된 것으로 제출됨

〈표 3-7〉 2023회계연도 과목별 수입결산

(단위 : 백만원)

구분	기금운용계획		수납액 (B)	증감액 (C=B-A)	주요증감내역
	당초 (A)	수정			
계	5,197,325	6,539,613	6,531,782	1,334,456	
전입금	461,376	1,545,424	1,443,534	982,158	①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9,624억 8,700만원 ②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200억원 ③자원회수시설 주민영향지역 주민지원금 △2억 9,300만원
보조금	8,964	11,557	10,111	1,146	①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11억 4,600만원
차입금	-	-	-	-	
용자금회수 (이자포함)	309,071	299,988	272,170	△36,901	①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106억 3,000만원 ②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계정 △279억 900만원
예탁금회수	25,920	25,920	25,920	-	
예치금회수	2,811,743	3,273,114	3,266,905	455,162	①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1,065억 3,900만원 ②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3,341억 8,600만원 ③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887억 7,000만원
예수금	1,374,150	1,059,594	1,059,594	△314,556	①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3,245억 5,600만원
이자수입	142,119	145,808	167,544	25,424	①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53억 9,100만원 ②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44억 4,300만원
기타수입	63,980	178,206	286,001	222,021	①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612억 5,500만원 ②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1,431억 2,800만원

- **전입금**은 당초 4,613억 7,600만원으로 계획하였으나, 결산결과 9,821억 5,800만원 증가한 1조 4,435억 3,400만원이 실수납된 바,
 - 2022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9,624억 8,700만원 적립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에서 200억원 증가, **자원회수시설 주민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서 △2억 9,300만원 감소 등에 기인한 것으로 확인됨

- **보조금**은 당초 89억 6,400만원으로 계획하였으나, 결산결과 11억 4,600만원이 증가한 101억 1,100만원이 실수납된 바, 호우피해 재난지원 국고보조금 11억 4,600만원이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으로 교부됨에 따라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 **용자금회수**는 당초 3,090억 7,100만원으로 계획하였으나, 2,721억 7,000만원이 수납되어 당초 대비 △369억 100만원이 감소한 바,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서 이자율 변동 등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로 당초 회수계획보다 △106억 3,000만원을 감수납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계정**에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등의 정책 시행에 따른 △279억 900만원을 감수납한 것으로 확인됨

- **예치금회수**는 지난 회계연도말 지출항목에 예치한 여유재원을 당해연도에는 수입항목으로 연동시켜 계상하는 수입 과목으로 당초 2조 8,117억 4,300만원으로 계획하였으나, 4,551억 6,200만원 증가한 3조 2,669억 500만원이 실수납된 바,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1,065억 3,900만원 감소하였으나, 2022회계연도 결산결과를 반영한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은 3,341억 8,600만원, **구호계정**은 887억 7,000만원 등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 **예수금**은 당초 1조 3,741억 5,000만원으로 계획하였으나, △3,145억 5,600만원이 감소한 1조 595억 9,400만원이 실수납된 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서 회계 및 기금별 예수금 조정에 따라 △3,245억

5,6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됨

- **이자수입**은 당초 1,421억 1,900만원으로 계획하였으나, 254억 2,400만원 증가한 1,675억 4,400만원이 실수납된 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서 53억 9,100만원, **구호계정**에서 44억 4,300만원 등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확인됨

- **기타수입**은 당초 639억 8,000만원으로 계획하였으나, 2,220억 2,100만원 증가한 2,860억 100만원이 실수납된 바,
 - 코로나19와 침수복구 등의 사업 종료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에서 612억 5,500만원 및 **구호계정**에서 1,431억 2,800만원 등의 반환금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확인됨

〈표 3-8〉 기금별 수입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수입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B)	수입계획 현액 (C=A+B)	징수 결정액 (D)	실제 수납액 (E)	수납률 (E / C)
		당초	수정 (A)					
계		5,197,325	6,539,613	36,130	6,575,743	6,570,324	6,531,782	99.3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579,660	4,185,929	-	4,185,929	4,094,606	4,094,606	97.8
	통합계정	1,758,938	1,321,633	-	1,321,633	1,322,603	1,322,603	100.7
	재정안정화계정	1,820,722	2,864,295	-	2,864,295	2,772,002	2,772,002	96.7
중소기업육성기금		496,466	607,290	-	607,290	588,445	586,079	96.5
	융자계정	372,648	426,998	-	426,998	401,014	401,014	93.9
	투자계정	86,986	128,905	-	128,905	132,343	132,343	102.6
	사회적경제계정	36,832	51,385	-	51,385	55,089	52,720	102.6
식품진흥기금		11,408	18,394	-	18,394	20,083	20,083	109.1
기후대응기금		66,594	78,723	4,407	83,130	83,695	79,287	95.3
도로굴착복구기금		52,751	71,771	1,381	73,153	73,023	71,641	97.9
성평등기금		1,473	1,854	-	1,854	1,916	1,916	103.3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 지역주민지원기금		39,824	38,823	-	38,823	37,032	37,032	95.3
사회복지기금		55,430	59,899	-	59,899	58,091	58,091	96.9
	노인복지계정	1,738	1,845	-	1,845	1,622	1,622	87.9
	장애인복지계정	9,736	12,736	-	12,736	13,065	13,065	102.5
	자활계정	5,040	6,302	-	6,302	6,344	6,344	100.6
	주거지원계정	38,913	39,015	-	39,015	37,058	37,058	94.9
체육진흥기금		12,179	14,347	54	14,402	16,421	16,367	113.6
재난관리기금		679,512	1,245,005	29,872	1,274,877	1,371,961	1,342,052	105.2
	재난계정	576,729	975,987	29,872	1,005,859	1,031,689	1,001,781	99.5
	구호계정	102,782	269,018	-	269,018	340,272	340,271	126.4
남북교류협력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		26,137	33,431	-	33,431	33,487	33,487	100.1
대외협력기금		10,176	10,945	174	11,119	11,342	11,168	100.4
	국내협력계정	4,055	4,606	174	4,780	4,866	4,691	98.1
	국제협력계정	6,120	6,338	-	6,338	6,476	6,476	102.1
도시재생기금		67,887	72,805	240	73,045	80,985	80,745	110.5
관광진흥기금		2,926	3,437	-	3,437	3,526	3,520	102.4
	서울관광긴급지원계정	2,539	2,968	-	2,968	3,085	3,079	103.7
	서울관광플라자계정	386	469	-	469	441	441	93.9
공무원주거안정기금		25,249	23,538	-	23,538	22,173	22,173	94.2
하수도사업회전기금		69,646	73,292	-	73,292	73,231	73,231	99.9
고향사랑기금		-	124	-	124	297	297	238.7

2). 지출결산

○ 기금운용계획에 따른 지출계획은 당초 5조 1,973억 2,500만원이었으나, 회계연도중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6조 5,396억 1,300만원으로 지출계획을 변경하고, 6조 4,906억 8,3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772억 2,9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한 것으로 제출됨

〈표 3-9〉 지출결산 결과 (요약)

(단위 : 백만원)

구분	지출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B)	지출계획 현액 (C=A+B)	지출액 (D)	다음연도 이월액 (E)	집행잔액 ^{주1)} (F=C-D-E)
	당초	수정 (A)					
계	5,197,325	6,539,613	36,130	6,575,743	6,490,683	77,229	7,831
비용자성 사업비	433,001	895,220	32,348	927,568	688,923	73,842	164,802
용자성 사업비	259,049	490,316	3,782	494,098	450,685	3,386	40,025
예치금	1,407,453	2,445,212	-	2,445,212	2,642,585	-	△197,373 ^{주2)}
예수금 원리금상환	151,872	143,819	-	143,819	143,763	-	55
예탁금	1,448,100	1,063,340	-	1,063,340	1,063,340	-	-
차입금 원리금상환	1,475,093	1,368,324	-	1,368,324	1,368,324	-	-
기본경비	510	494	-	494	285	-	209
인력운영비	144	2,437	-	2,437	2,326	-	111
기타지출	22,099	130,448	-	130,448	130,448	-	-

※ 주1) 기금은 세부사업에서 발생된 집행잔액을 여유재원으로 예치함에 따라 기금결산서에는 집행잔액을 표기하지 않으나, 해당 표의 집행잔액은 세부사업의 지출상황을 산술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것임

주2) 세부사업에서 발생된 집행잔액의 합계이나, 여유재원으로 초과지출되어 △으로 표시됨

○ **비용자성사업비**는 지출계획현액 9,275억 6,800만원 중 6,889억 2,300만원을 지출하고, 738억 4,200만원(지출계획현액 대비 7.9%)이 이월되었으며 1,648억 200만원(지출계획현액 대비 17.7%)이 미집행된 것으로 제출된 바,

〈표 3-10〉 기금별 비융자성사업비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기 금 명	사업수	지출계획현액 (A)	지 출 액 (B)	다음연도 이 월 액 (C)	불 용 액 (D=A-B-C)	불용률 (E = D / A)
계		927,568	688,923	73,842	164,802	17.7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	155,000	155,000	-	-	-
재정안정화계정	1	155,000	155,000	-	-	-
중소기업육성기금	16	188,308	129,475	-	58,832	31.2
용자계정	3	104,215	91,133	-	13,082	12.5
투자계정	11	83,622	38,106	-	45,516	54.4
사회적경제계정	2	470	235	-	234	49.8
식품진흥기금	13	2,271	2,067	-	204	9.0
기후대응기금	24	11,246	8,082	85	3,077	27.3
도로굴착복구기금	2	44,967	40,264	1,027	3,676	8.1
성평등기금	4	1,013	921	-	92	9.0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 지역주민지원기금	11	31,001	28,437	-	2,563	8.2
사회복지기금	13	30,724	6,555	-	24,168	78.6
노인복지계정	7	1,318	1,064	-	254	19.2
자활계정	5	605	604	-	1	0.3
주거지원계정	1	28,800	4,887	-	23,912	83.0
체육진흥기금	15	10,634	10,318	-	316	2.9
재난관리기금	7	439,171	298,059	72,608	68,503	15.6
재난계정	3	353,256	219,736	72,608	60,911	17.2
구호계정	4	85,915	78,323	-	7,592	8.8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	1	3,278	482	-	2,795	85.2
대외협력기금	19	6,712	6,147	-	564	8.4
국내협력계정	11	3,355	3,035	-	319	9.5
국제협력계정	8	3,357	3,112	-	245	7.3
도시재생기금	1	1,418	1,290	120	6	0.4
관광진흥기금	4	1,820	1,820	-	-	-
서울관광긴급지원계정	4	1,820	1,820	-	-	-

-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은 11개의 세부사업에 836억 2,200만원을 지출계획하여 381억 600만원(지출계획현액 대비 45.5%)을 지출한 것으로
- 서울Vision2030펀드의 글로벌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유동성 감소 및 벤처투자시장 위축 등으로 지출계획현액 836억원 2,200만원중 455억 1,600만원(지출계획현액 대비 54.4%)이 미집행된 것으로 확인됨

〈표 3-11〉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비용자성사업비 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

기 금 명	세 부 사 업 명	지출계획현액 (A)	지출액 (B)	집행잔액 (C=A-B)	불용률 (D=C/A)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계	83,622	38,106	45,516	54.4
	서울Vision2030펀드 운용 및 관리	422	422	-	-
	4차산업혁명펀드 출자	7,000	5,060	1,940	27.7
	스마트시티펀드 출자	9,000	4,451	4,549	50.5
	창업지원펀드 출자	13,500	8,745	4,755	35.2
	재도전지원펀드 출자	4,000	1,600	2,400	60.0
	서울바이오펀드 출자	10,000	8,013	1,987	19.8
	문화콘텐츠산업펀드 출자	6,500	3,675	2,825	43.4
	스케일업펀드 출자	18,000	2,000	16,000	88.8
	첫걸음동행펀드 출자	7,000	2,450	4,550	65.0
	디지털대전환펀드 출자	7,000	1,450	5,550	79.2
	녹색기업 창업펀드 제5호 출자	1,200	240	960	80.0

-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은 1개의 세부사업에 비용자성사업비 288억원을 지출계획하여 48억 8,500만원(지출계획현액 대비 16.9%)을 지출한 것으로

- 저소득층 주택임대료 보조지급 사업은 반지하 거주 가구가 이주한 이후 바우처가 지급되는 등의 사유로 지원실적이 저조하여 지출계획현액 288억원중 239억 1,200만원(지출계획현액 대비 83.0%)이 미집행된 것으로 확인됨

〈표 3-12〉 사회투자기금 주거지원계정 비용자성사업비 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

기 금 명	세 부 사 업 명	지출계획현액 (A)	지출액 (B)	집행잔액 (C = A - B)	불용률 (D = C / A)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저소득층 주택임대료 보 조 지 급	28,800	4,887	23,912	83.0

-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의 경우 1개의 세부사업에 비용자성 사업비 32억 7,800만원을 지출계획하여 4억 8,200만원(지출계획현액 대비 14.7%)을 지출한 것으로 남북관계 경색 등에 따른 사업 미추진으로 확인됨

〈표 3-13〉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 비용자성사업비 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

기 금 명	세 부 사 업 명	지출계획현액 (A)	지출액 (B)	집행잔액 (C = A - B)	불용률 (D = C / A)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	남북교류협력사업	3,278	482	2,795	85.2

- **용자성사업비**는 지출계획현액 4,940억 9,800만원 중 91.2%, 4,506억 8,500만원을 지출하고, 33억 8,600만원(지출계획현액 대비 0.6%)을 이월하였으며 400억 2,500만원(지출계획현액 대비 8.1%)을 미집행한 것으로 제출됨

〈표 3-14〉 기금별 융자성사업비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기 금 명	사업수	지출계획현액 (A)	지 출 액 (B)	다 음 연 도 이 월 액 (C)	집 행 잔 액 (D=A-B-C)	불 용 률 (E=D/A)
계	11	494,098	450,685	3,386	40,025	8.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 합 계 정	1	221,300	221,300	-	-	-
중소기업육성기금 용 자 계 정	1	200,000	170,531	-	29,468	14.7
중소기업육성기금 사 회 적 경 제 계 정	1	5,000	1,790	-	3,210	64.2
식 품 진 흥 기 금	1	2,000	1,942	-	57	2.9
기 후 대 응 기 금	3	31,463	24,492	3,386	3,584	11.3
사 회 복 지 기 금 장 애 인 복 지 계 정	1	7,400	4,885	-	2,515	33.9
사 회 복 지 기 금 자 활 계 정	1	335	305	-	30	8.9
사 회 복 지 기 금 주 거 지 원 계 정	1	8,600	7,440	-	1,160	13.4
공무원주거안정기금	1	18,000	18,000	-	-	-

-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의 사회적경제기업 투용자는 50억원을 지출계획하여 17억 9,000만원(지출계획현액 대비 35.8%)을 집행한 바, 기금운용 방식 변경에 따른 수행주체 선정이 지연됨에 따라 용자 신청을 10월에 추진하는 등 실행이 지연되어 기금지출이 부진하였던 것으로 확인됨

〈표 3-15〉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 투용자 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

기 금	세 부 사 업 명	지출계획현액 (A)	지출액 (B)	집행잔액 (C = A - B)	불용률 (D = C / A)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	사회적경제기업 투용자	5,000	1,790	3,210	64.2

- 예치금은 당초 1조 4,074억 5,300만원으로 계획하고, 회계연도중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2조 4,452억 1,200만원으로 지출계획을 변경하였으나, 2조 6,425억 8,500만원이 지출(예치)된 바,

〈표 3-16〉 예치금 계획 대비 지출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기 금 운 용 계 획		지 출 액	지 출 액 - 수 정 계 획
당 초 (A)	수 정 (B)		
1,407,453	2,445,212	2,642,585	△197,373

- 당초 예치금 지출계획보다 여유재원 예치가 증가한 것은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적립에 따른 예치금 증가 등의 사유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9,030억 6,900만원 증가하고,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은 이자 수입 및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등의 증가로 2,717억 7,500만원 증가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은 949억 5,0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결산결과를 제출한 것임
- 관련 법령에 따라 출납사무가 완결되는 '24년 1월20일 현재, 각 기금별 예치금 지출계획과 실제 적립액을 비교하면, 1,973억 7,100만원 초과 적립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
 -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은 지출계획액보다 123.4%, 490억 3,000만원이 예치금에 추가 적립된 상태이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도 지출계획액보다 15%, 165억 7,100만원 예치금에 추가 적립되어 있고,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의 경우에는 예치금 지출계획액보다 1,430.4%, 231억 1,500만원이 실제 초과 적립된 것으로 확인되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의 경우에는 지출계획액보다 실제 예치금 적립액이 △922억 7,200만원(△7.7%) 부족하게 적립되었고, **공무원주거안정기금**의 경우에도 지출계획보다 △13억 5,900만원 부족하게 적립(예치)된 것으로 확인됨

- 예치금이 당초 계획보다 실제 초과 혹은 부족 적립(예치)되는 것은 회계연도가 종료되기 전까지 각 기금별 실제 예치된 재원과 지출계획상 예치금 적립계획을 일치시키지 않은 결과로써 이른바 ‘실제 통장잔고’와 ‘장부상 계획’을 현행화시키지 않아 발생된 결과로 판단됨
 - 예치금의 ‘장부상 계획’과 ‘실제 통장잔고’가 불일치하는 것은 결산 승인을 위하여 제출된 기금결산중 예치금 규모를 신뢰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것은 물론 다음연도 수입계획(예치금회수)에 있어서도 실제 통장잔고가 아닌 장부상 계획치를 반영하는 오류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계획과 실제간 현행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관련 법령은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상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의회로부터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으나, ①**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은 의회의 승인 없이 지출계획을 변경하도록 정하고 있고, ②**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바,**
- ‘장부상 계획’과 ‘실제 통장잔고’와 차이가 있는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을 포함한 8개 기금(계정포함)은 금번 제324회 정례회중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여 의회의 의결을 통해 불일치 상태를 해소할 것으로 예상됨
 - 아울러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과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의 승인 없이도 회계연도중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해 불일치 상태를 해소할 것으로 사료되며 나머지 개별 기금의 경우에도 예치금 불일치 규모가 정책사업의 지출금액 20% 이하에 해당된다면 관련 법령에 따라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해 예치금의 ‘장부상 계획’과 ‘실제 통장잔고’ 불일치 상태를 해소할 것으로 사료됨

- 행정안전부의 관련 기준과 서울시 관련기준 및 행정안전부 질의회신에 의하면, 다음년도 수입계획의 예치금회수는 직전연도말 기준으로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실제 잔액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어

- 회계연도종료에 앞서 예치금의 '장부상 계획'과 '실제 통장잔고'를 일치시킴으로써 불일치 상태를 정비하는 것은 물론 장부상 허수가 기금의 수입·지출계획에 반영되는 불합리한 사례를 개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표 3-17〉 기금별 예치금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 금 운 용 계 획		지 출 계 획 현 액	지 출 액
		당 초 수	정		
계		1,407,453	2,445,212	2,445,212	2,642,585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54,033	1,283,583	1,283,583	1,192,284
	통합계정	357,111	91,320	91,320	92,292
	재정안정화계정	196,922	1,192,263	1,192,263	1,099,992
중소기업육성기금		94,960	175,783	175,783	246,171
	융자계정	55,787	110,138	110,138	126,708
	투자계정	27,820	39,740	39,740	88,769
	사회적경제계정	11,352	25,905	25,905	30,693
식품진흥기금		7,335	14,118	14,118	16,071
기후대응기금		44,107	40,416	40,416	47,643
도로굴착복구기금		18,800	28,170	28,170	31,727
성평등기금		473	714	714	893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12,680	7,821	7,821	8,594
사회복지기금		9,404	12,811	12,811	38,892
	노인복지계정	1,430	523	523	555
	장애인복지계정	2,295	5,316	5,316	8,172
	자활계정	4,164	5,356	5,356	5,433
	주거지원계정	1,513	1,615	1,615	24,731
체육진흥기금		1,845	3,757	3,757	6,102
재난관리기금		490,474	691,552	691,552	857,200
	재난계정	444,316	629,292	629,292	716,092
	구호계정	46,157	62,260	62,260	141,107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		22,759	30,053	30,053	32,995
대외협력기금		5,495	4,254	4,254	5,045
	국내협력계정	1,082	1,422	1,422	1,828
	국제협력계정	4,412	2,831	2,831	3,216
도시재생기금		66,881	71,617	71,617	79,566
관광진흥기금		1,312	1,607	1,607	1,697
	서울관광간접지원계정	925	1,138	1,138	1,256
	서울관광플라자계정	386	469	469	441
공무원주거안정기금		7,242	5,531	5,531	4,172
하수도사업회전기금		69,646	73,292	73,292	73,231
고향사랑기금		-	124,637	124,637	297

- **예수금원리금상환**은 당초 1,518억 7,200만원으로 지출계획 하였으나, △81억 900만원 감소된 1,437억 6,30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서 △80억 5,3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에서 △5,500만원 감소한 것으로 확인됨

〈표 3-18〉 예수금원리금상환 당초계획 대비 지출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 금 운 용 계 획		지 출 액 (B)	증 감 액 (B-A)	증 감 사 유
	당 초 (A)	수 정			
예 수 금 원 리 금 상 환	151,872	143,819	143,763	△8,109	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80억 5,300만원 감소 ②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5,500만원 감소

- **예탁금**은 당초 1조 4,481억원을 지출계획 하였으나, 회계연도중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당초 지출계획보다 △3,847억 6,000만원 감소된 1조 633억 3,400만원으로 변경하여 전액 예탁한 것으로 확인됨

〈표 3-19〉 예탁금의 당초계획 대비 지출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 금 운 용 계 획		지 출 액 (B)	증 감 액 (B-A)	증 감 사 유
	당 초 (A)	수 정			
예탁금	1,448,100	1,063,340	1,063,340	△384,760	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3,847억 6,000만원 감소

- **차입금원리금상환**은 당초 1조 4,750억 9,300만원을 지출계획하였으나, 회계연도중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1조 3,683억 2,400만원으로 지출계획을 변경하고 전액 상환한 바,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의 경우, 레고랜드 사태 이후 채권시장의 높은 변동성으로 지방채 발행 규모가 축소되어 원금 상환액이 감소하였고, 차입기간 단축 등으로 이자 상환액 등도 감소하였음

〈표 3-20〉 차입금원리금상환의 당초계획 대비 지출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기금운용계획		지출액 (B)	증감액 (B-A)	증감사유
	당초 (A)	수정			
차입금 원리금 상환	1,475,093	1,368,324	1,368,324	△106,768	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 △1,067억 6,800만원 감소

- **인력운영비**는 당초 1억 4,400만원으로 계획하였으나, 회계연도중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24억 3,700만원으로 지출계획을 변경하고 23억 2,600만원이 지출된 바,
 - 행정안전부의 관련 기준은 인력운영비의 경우 일반회계에서 집행되므로 계상이 불가하나, 기금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의 일시 폭증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계상이 가능한 바, 기금의 지출항목을 통해 지출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은 전년도에 이어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당초 인력운영비를 계획하지 않고 있다가 회계연도 개시 이후 2회의 지출계획을 변경하여 인건비 19억 8,000만원을 지출한 바,
 -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에서도 인력운영비의 산출기초가 부족한 것을 지적한 바 있음에도 시정되지 않고 있어 의회의 심사 취지를 등한시한 사례일 수 있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표 3-21〉 인력운영비 당초계획 대비 증감사유

(단위 : 백만원)

구분	기금운용계획		지출액 (B)	증감액 (B-A)	증감사유
	당초	수정			
	(A)				
인력운영비	144	2,437	2,326	2,182	①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19억 8,000만원 증가 ②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2억 600만원 증가

○ **기본경비**는 당초 5억 1,000만원으로 계획하였으나 △2억 2,500만원 감소한 2억 8,500만원을 지출한 바,

- 코로나19에 따른 대면회의 감소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 △9,000만원, 지방채 발행이 축소됨에 따라 수수료가 감액되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서 △2,100만원 등이 감소된 것으로 확인됨

〈표 3-22〉 기본경비의 당초계획 대비 지출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기금운용계획		지출액 (B)	증감액 (B-A)	증감사유
	당초	수정			
	(A)				
기본경비	510	494	285	△225	①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 △9,000만원 감소 ②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2,100만원 감소 등

○ **기타지출**은 당초 220억 9,900만원을 계획하였으나, 회계연도중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1,083억 4,800만원(당초대비 490.2%)을 증액한 1,304억 4,800만원으로 지출계획을 변경하여 전액 지출한 바,

-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은 당초 기타지출을 계획하지 않았으나, 2021회계연도 생활치료센터 국고보조금 98억 1,200만원을 반납하고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전액 지출한 것으로 확인됨

- 동 계정은 지난 '22회계연도에도 '20회계연도 국고보조금 반납액 편성을 위해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누락한 지출내역을 지출계획변경을 통해 융통한 바, 국고보조금 반납액은 예측가능한 지출임에도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기금운용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표 3-23〉 기타지출 당초계획 대비 증감사유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 금 운 용 계 획		지 출 액 (B)	증 감 액 (B-A)	증 감 사 유
	당 초 (A)	수 정			
기타지출	22,099	130,448	130,448	108,348	①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98억 1,200만원 증가 ②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985억 3,600만원 증가

다. 기금운용계획 변경

-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을 제외하고,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이하 변경인 경우에 한해 지방의회의 의결 없이 변경이 가능한 바,
 - 총 17개 기금 26개 계정 중 13개 기금, 20개 계정에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이중 22건이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의 의결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됨
-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각 기금별 개별 조례로 설치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바,
 - '23회계연도에는 심의위원회를 20회 개최하여 22건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하였으나 이중 3회의 심의위원회를 제외하고는 모두 서면회의로 개최하였음
 - 코로나19로 인해 서면심의가 활성화되어 있으나 관련 규칙에 따르면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서면회의로 갈음하기보다 대면회의를 통해 의회에 기금운용과 관련된 개별 사안이 심도있게 심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 3-24A〉 지방기금법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은 기금운용계획 변경 현황

회 기 기 금 명	지출계획 주요 변경내용	의결 결과	
제 319회 정례회 ('23.6)	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무활동 △5,082억 400만원(△29.4%) - 예탁금 1조 2,681억 →9,533억 4,000만원(△3,147억6,000만원) - 예수금이자 상환: 516억 7,200만원 →436억 1800만원(△80억5400만원) - 예치금: 3,571억 1,100만원 →1,626억 2,000만원(△1,944억 9,100만원) - 공사공단등용자금 0 →150,000만원(순증) 	수정 가결
	②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효율적 재정운영 1,550억(순증) - 출자금 0 →155,000만원 ▶서울교통공사 출자 지원 증액 재무활동 8,993억 6,400만원(49.4%) - 예치금 1,969억 2,300만원 →1조 962억 8,700만원(8,993억 6,400만원) 	원안 가결
	③성평등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무활동 3억 8,100만원(80.5%) - 예치금 4억 7,300만원 →8억 5,400만원(3억 8,100만원) 	원안 가결
	④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계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무활동 543억 5,100만원(17.7%) - 예치금 557억 8,700만원 →1,101억 3,800만원 ▶2022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른 예치금 조정 	원안 가결
	⑤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활동 300억(55.9%) -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투자지원 536억 2,200만원 →836억 2,200만원 ▶서울 Vision2030펀드 신규조성 및 미래혁신성장펀드 유지관리 증액 재무활동 119억 1,900만원(35.7%) - 예치금 278억 2,000만원 →397억 4,000만원 ▶2022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른 예치금 조정 	수정 가결
	⑥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활동 10억 4,500만원(80.7%) - 비용자성사업비 18억 8,900만원 →29억 3,400만원 ▶서울시청년해외봉사단 증액(7억 4500만원) ▶유스글로벌리더십 신규편성(3억) 재무활동 △10억 4,500만원(△26.2%) - 예치금 43억 →32억 5,500만원 ▶2022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른 예치금 조정 	수정 가결
	⑦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활동 10억 1,300만원(331.2%) - 비용자성사업비 0 →7억 8,300만원 ▶디지털 돌봄 역량 강화 사업 신규편성(3억) ▶스마트 노인복지관 조성 신규편성(4억 5,000만원), ▶스마트장비 연계 재가어르신 복약·정서지원 신규편성(3,300만원) - 용자성사업비 1억 →3억 3,000만원 ▶어르신일자리 사업장 임대자금 용자지원 증액(2억 3,000만원) 	원안 가결
	⑧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무활동 29억 9,800만원(131.5%) - 예치금 22억 9,600만원 →53억 1,500만원(30억 1,900만원) ▶2022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른 예치금 조정 - 기본경비 감액: 4,100만원 →2,000만원(△2,100만원) 	원안 가결

〈표 3-24B〉 지방기금법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은 기금운용계획 변경 현황

회 기 기 금 명	지출계획 주요 변경내용	의결 결과	
제 319회 정 려 회 (' 23.6)	⑨ 사 회 복 지 기 금 자 활 계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무활동 11억 9,100만원(28.6%) - 예치금 41억 6,500만원 → 53억 5,600만원 ▶ 수입계획 변경에 따른 예치금 증가 	원안 가결
	⑩ 관 광 진 흥 기 금 서 울 관 광 긴 급 지 원 계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무활동 4억 2,900만원(46.3%) - 예치금 9억 2,600만원 → 13억 5,400만원 ▶ 2022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른 예치금 조정 	원안 가결
	⑪ 관 광 진 흥 기 금 서 울 관 광 플 라 자 계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무활동 8,200만원(21.4%) - 예치금 3억 8,700만원 → 4억 6,900만원 ▶ 2022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른 예치금 조정 	원안 가결
	⑫ 기 후 대 응 기 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활동 118억 1,400만원(44.6%) - 비용자성사업비 87억 8,400만원 → 105억 9,800만원 ▶ 국제기후테크 컨퍼런스(2억 9,000만원) ▶ 수성도로 전환장비 구매지원(3억 2,000만원) ▶ 난방효율 개선 (8억 5,400만원) ▶ 플라스틱 열분해 활성화(3억 5,000만원) - 용자성사업비 176억 8,400만원 → 276억 8,400만원 ▶ 민간건물 에너지효율화사업 증액(100억원) 	원안 가결
	⑬ 체 육 진 흥 기 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활동 2억 5,600만원(2.5%) - 비용자성 사업비 103억 2,400만원 → 105억 8,000만원 ▶ 태릉라이플사격장 운영 재무활동 19억 1,200만원(103.6%) - 예치금 18억 4,500만원 → 37억 5,700만원 ▶ 2022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른 예치금 조정 	원안 가결
	⑭ 공 무 원 주 거 안 정 기 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무활동 △17억 1,100만원 (△23.6%) - 예치금 72억 4,200만원 → 55억 3,100만원 ▶ 예치금 회수수입 감소에 따른 예치금 감액 	원안 가결
	⑮ 대 외 협 력 기 금 국 내 협 력 계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활동 △1억 3,000만원(△3.0%) - 비용자성 사업비 30억 1,100만원 → 28억 8,100만원 ▶ ‘서울정책연수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감액(△1억 3,000만원) 재무활동 6억 3,900만원(59%) - 예치금 10억 4,200만원 → 17억 2,200만원 ▶ 2022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른 예치금 조정 	원안 가결
	⑯ 남 북 교 류 협 력 및 평 화 통 일 기 반 조 성 기 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무활동 72억 9,300만원(32.0%) - 예치금 227억 5,900만원 → 300억 5,300만원 ▶ 2022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른 예치금 조정 	원안 가결

〈표 3-24C〉 지방기금법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은 기금운용계획 변경 현황

회 기 기 금 명	지출계획 주요 변경내용	의결 결과	
제 321회 정 려 회 ('23.12)	⑰ 식 품 진 흥 기 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무활동 69억 8,600만원(92.5%) - 예치금 71억 3,100만원 →141억 1,800만원 ▶ 2022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른 예치금 조정 	원안 가결
	자 원 회 수 시 설 ⑱ 주 변 영 향 지 역 주 민 지 원 기 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무활동 △25억 5,400만원(△38.3%) - 예치금 103억 7,600만원 →78억 2,100만원 ▶ 2022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른 예치금 조정 	원안 가결
	⑲ 기 후 대 응 기 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무활동 △121억 800만원(42.8%) - 예치금 283억 800만원 →404억 1,600만원 ▶ 2022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른 예치금 조정 	원안 가결
	⑳ 중 소 기 업 육 성 기 금 사 회 적 경 제 계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무활동 145억 5,300만원 (128.2%) - 예치금 113억 5,200만원 →259억 500만원 ▶ 2022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른 예치금 조정 	원안 가결
	㉑ 도 로 굴 착 복 구 기 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무활동 8,900만원 (46.1%) - 예치금 192억 7,100만원 →281억 7,100만원 ▶ 수입계획대비 예치금회수 증가에 따른 지출 	원안 가결
	㉒ 통 합 재 정 안 정 화 기 금 통 합 계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활동 713억원(47.5%) - 용자성 사업비 1,500억원 →2,213억원 ▶ 서울에너지공사 재정적자 보전 재무활동 △1,413억원(△11.4%) - 예탁금 9,533억 4,000만원 →8,833억 4,000만원(△700억원) ▶ 특별회계 재원상황 반영 - 예치금 1,626억 2000만원 →913억 2,000만원(△713억원) ▶ 서울에너지공사 재정적자 보전 	수정 가결

라. 각 기금의 세부사업별 미집행 현황

1). 융자성사업 세부사업별 미집행 현황

○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의 사회적경제기업 투용자는 50억원을 지출계획하였으나, 17억 9,000만원을 집행하여 32억 1,000만원(지출계획 대비 64.2%)이 미집행된 바,

- 동 사업은 '22회계연도에도 120억원을 지출계획하였으나, 융자 수요가 미발생하여 전액 미집행되었다는 점에서 과도한 지출잔액이 발생 되지 않도록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지출 가능성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3-25〉 미집행액 10억원 이상이거나 미집행률 50% 이상인 세부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

기 금	세 부 사 업 명	지출계획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C)	불용액 (C=A-B-C)	불용률 (D = C / A)
중소기업육성기금 용 자 계 정	중 소 기 업 직 접 용 자	200,000	170,531	-	29,468	14.7
중소기업육성기금 사 회 적 경 제 계 정	사 회 적 경 제 기 업 투 용 자	5,000	1,790	-	3,210	64.2
기 후 대 응 기 금	민 간 건 물 에 너 지 효 율 화 지 원	31,463	24,492	3,386	3,584	11.3
사 회 복 지 기 금 장 애 인 복 지 계 정	장 애 인 전 세 주 택 지 원 사 업	7,400	4,885	-	2,515	33.9
사 회 복 지 기 금 주 거 지 원 계 정	저 소 득 층 주 택 임 대 보 증 금	8,600	7,440	-	1,160	13.4

2). 비용자성사업 세부사업별 미집행 현황

- '23회계연도에는 14개 기금, 20개 계정에서 비용자성사업비로 131건의 세부사업을 지출계획하였으나, 미집행률 50.0% 이상 발생한 사업이 19건, 미집행액 10억원 이상 발생 사업이 23건으로 확인되는 바,
 -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은 글로벌 기준금리 인상으로 유동성 감소 및 벤처투자시장이 위축되어 **스케일업 펀드 출자**의 경우에는 지출계획현액 180억원중 20억원을 지출하고, 160억원(미집행률 88.8%)이 미집행된 것으로 확인됨
 - **기후대응기금**의 경우, 민간건물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전년도 이월액 6억 1,100만원을 포함한 16억 2,000만원을 지출계획 하였으나 신축건물 등의 공사 지연으로 인한 사업 취소 등의 사유로 11억 6,600만원(미집행률 71.9%)이 미집행된 바, 지출계획시 실제 지출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중 저소득층 주택임대료 보조지급은 288억원을 지출계획하였으나, 239억 1,300만원(미집행률 83.0%)이 미집행된 바, 지원대상 및 지원기간의 확대에서 불구하고 집행률이 낮아 정책수요자 등의 의견수렴 등을 통한 사업 재구조화 등 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일반회계에 편성된 세출예산의 경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매 회계연도에 편성된 사업예산의 경비중 불용액(집행잔액)은 다음연도에 해당 사업예산에 사용할 수 없으나,
 - 기금의 경우에는 사업비에서 발생한 미집행액은 예치금으로 적립되어 해당 기금의 사업비로 다시 활용된다는 점에서 불용이나 미집행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둔감한 자원운용환경으로 사료되나,

- 당해연도에 지출계획한 사업이 사업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예측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출계획을 변경하는 등 기금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3-26〉 지출계획현액 대비 50% 이상 미집행된 세부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

기 금 명	세 부 사 업 명	지출계획 현액 ^{주1)}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C)	불용액 (D=A-B-C)	불용률 (E = D / A)
중소기업육성기금 투 자 계 정	스마트시티펀드 출자	9,000	4,451	-	4,549	50.5
중소기업육성기금 투 자 계 정	재도전지원펀드 출자	4,000	1,600	-	2,400	60.0
중소기업육성기금 투 자 계 정	스 케 일 업 펀 드	18,000	2,000	-	16,000	88.8
중소기업육성기금 투 자 계 정	첫걸음동행펀드 출자	7,000	2,450	-	4,550	65.0
중소기업육성기금 투 자 계 정	디지털대전환펀드 출자	7,000	1,450	-	5,550	79.2
중소기업육성기금 투 자 계 정	녹색기업 창업펀드 제 5 호 출 자	1,200	240	-	960	80.0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	채권 및 기타관리비	100	13	-	86	86.7
식품진흥기금	먹거리전략 식거버너스 운영 및 활성화	80	4	-	75	94.7
기 후 대 응 기 금	민 간 건 물 신재생에너지 보급	1,620	454	-	1,166	71.9
기 후 대 응 기 금	난방 효율 개선사업	854	149	-	704	82.5
기 후 대 응 기 금	기후테크 경연대회	20	8	-	12	60.0
성 평 등 기 금	양 성 평 등 단 체 활성화 지원사업	100	50	-	50	50.0
사 회 복 지 기 금 노인복지 계정	어르신 주거지원	68	23	-	45	65.6
사 회 복 지 기 금 주거지원계정	저소득층 주택임대료 보 조 지 급	28,800	4,887	-	23,912	83.0
재 난 관 리 기 금 재 난 계 정	연 구 용 역	1,194	572	-	622	52.0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반조성금	남 북 교 류 협 력 사 업	3,278	482	-	2,795	85.2

주1) 지출계획현액 = 지출계획액 + 이월액

〈표 3-27〉 미집행액 발생규모 10억원 이상 세부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

기금명	세부사업명	지출계획 현액 ^{주1)}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C)	불용액 (D=A-B-C)	불용률 (E = D / A)
중소기업육성기 금융자계정	시중은행협력자금 지원	1,102,800	89,839	-	12,960	12.6
중소기업육성기 투자계정	4차산업혁명펀드 출자	7,000	5,060	-	1,940	27.7
중소기업육성기 투자계정	스마트시티펀드 출자	9,000	4,451	-	4,549	50.5
중소기업육성기 투자계정	창업지원펀드 출자	13,500	8,745	-	4,755	35.2
중소기업육성기 투자계정	재도전지원펀드 출자	4,000	1,600	-	2,400	60.0
중소기업육성기 투자계정	서울바이오펀드 출자	10,000	8,013	-	1,987	19.8
중소기업육성기 투자계정	문화콘텐츠산업펀드 출자	6,500	3,675	-	2,825	43.4
중소기업육성기 투자계정	스케일업펀드 출자	18,000	2,000	-	16,000	88.8
중소기업육성기 투자계정	첫걸음동행펀드 출자	7,000	2,450	-	4,550	65.0
중소기업육성기 투자계정	디지털대전환펀드 출자	7,000	1,450	-	5,550	79.2
기후대응기금	민간건물 신재생에너지 보급	1,620	4,454	-	1,166	71.9
도로굴착 복구기금	도로굴착복구공사	44,552	39,919	1,027	3,605	8.0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강남자원회수시설 지역주민아파트 관리비 및 임대료 지원	10,961	9,384	-	1,577	14.3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장애인 전세주택 지원사업	7,400	4,885	-	2,515	33.9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저소득층 주택임대료 보조지급	28,800	4,887	-	23,912	83.0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재난예방	322,453	194,907	72,608	54,937	17.0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응급복구	29,607	24,256	-	5,351	18.0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이재민 재해보상	51,441	47,586	-	3,855	7.4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의료 및 구호비 지원	13,559	10,627	-	2,931	21.6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반조성기금	남북교류협력사업	3,278	482	-	2,795	85.2

주1) 지출계획현액 = 지출계획액 + 이월액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생략」

VI. 심사결과 : 승인 (2024. 6.24)

서울특별시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의안 번호	1899
----------	------

제출년월일 : 2024년 5월 27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2023회계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7조 6,622억 8,000만원으로 2022회계연도 말 7조 2,080억 8,100만원에 비하여 4,541억 9,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17개 기금의 종류 및 연도말 조성액 내역은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조 9,389억 1,800만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2,661억 7,200만원
- 식품진흥기금	510억 7,200만원
- 기후대응기금	791억 1,600만원
- 도로굴착복구기금	327억 5,400만원
- 성평등기금	240억 9,400만원
-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105억 9,400만원
- 사회복지기금	692억 100만원
- 체육진흥기금	584억 2,400만원
- 재난관리기금	9,298억 900만원

- 남북교류협력기금	329억 9,500만원
- 대외협력기금	50억 4,500만원
- 도시재생기금	796억 8,700만원
- 관광진흥기금	66억 9,700만원
- 공무원주거안정기금	41억 7,200만원
- 하수도사업회전기금	732억 3,100만원
- 고향사랑기금	2억 9,800만원임.

3. 참고사항

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결산 승인)

법 제150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의 회기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자격 및 선임방법)

- ① 제2조에 따른 검사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추천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 ② 검사위원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거나, 서울특별시 내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 (이하 "서울특별시 등"이라 한다)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의원
2.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만큼의 직위에 있었던 사람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또는 그만큼의 직위에 있었던 사람
5.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 3년 이상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라.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검사위원의 직무)

- ① 검사위원은 서울특별시장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이 「지방회계법」 제3장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장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 및 그 증명서류로 검사업무를 수행한다.
- ② 검사위원은 시장 등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명서류를 이송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검사를 마쳐야 한다.
- ③ 검사위원은 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감사의견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모든 검사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 결산 검사를 마친 후 10일 이내에 시장 등에게 감사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

이 있으면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한다.

마.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검사위원은 서울특별시 등의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결산 개요
2. 세입·세출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서울특별시 등의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의 결산